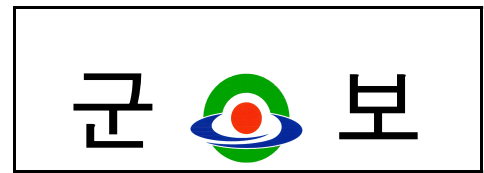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146호 2019. 2. 11.(월)

선 람	기 관 의 장

고 시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3차)승인 고시(예천군 고시 제2019-11호)

공 고

- 공인 폐기 및 신조(등록) 공고(예천군 공고 제2019-204호)
- 예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19-209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기획감사실(전화 650-6066)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3차)승인 고시

주택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승인하고 주택법 제15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11일

예 천 군 수

1. 사업명칭 : 경북도청이전신도시 B-2BL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2. 사업주체
 - 가. 사업주체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 (주)동일 김종각
 - 나. 주 소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621번길 624
3. 사업위치 :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경북도청이전신도시 B-2BL
4. 사업개요

사업종류	사 업 내 용	사업비	비 고
아파트 (분양)	○ 대지면적 : 87,979.60m ² ○ 연 면 적 : 236,106.1421m ² ○ 건설규모 : 지하 3층, 지상 11~25층, 23개동 1,499세대	388,056,000천원	

5. 사업시행기간 : 2016.04.21.~2019.02.28.(예정)
6. 변경승인내용

구분	변경내용	변경전	변경후		비고
사업개요	대지면적	87,979.5792 m ²	87,979.60 m ²	0.0208 증	지적확정측량 및 가감차로 기부채납부분 지적분할에 따른 변경
	기부채납면적	468.1208 m ²	468.10 m ²	0.0208 감	
	건축면적	16,292.2460 m ²	16,337.1567m ²	44.9107 증	
	연면적	236,047.6058 m ²	236,106.1421 m ²	58.5363 증	
	지상연면적	166,735.5882 m ²	166,773.1279 m ²	37.5397 증	
	용적률산정 연면적	166,062.7945 m ²	166,061.4835 m ²	1.3110 감	
	지하연면적	69,312.0176 m ²	69,333.0142 m ²	20.9966 증	
	건폐율	18.52%	18.57%	0.050 증	
	조경면적	32,634.47 m ² (37.09%)	33,251.34 m ² (37.79%)	616.870 증	
	생태면적률	40.96%	40.56%	0.40 감	
동별·층별 개요	어린이집	359.0939 m ² (지상층)	357.7829 m ² (지상층)	1.3110 감	
	작은도서관	222.2135 m ² (지상층)	221.7456 m ² (지상층)	0.4679 감	
	어린이놀이터	1,593.9000 m ²	1,593.8700 m ²	0.03 감	
	주민운동시설 (실외)	1,313.3200 m ²	1,306.0200 m ²	7.3 감	
	주민운동시설 (실내)	2,078.2039 m ² (지하층)	2,080.7618 m ² (지하층)	2.5579 증	
	키즈랜드	546.0286 m ²	543.7966 m ²	2.2320 감	
	주민공동시설 합계	6,324.9599 m ²	6,323.6069 m ²	1.353 감	
	유아놀이터	183.2075 m ²	187.5884 m ²	4.3809 증	
	수영장펌프	261.6785 m ²	268.284 m ²	6.6055 증	
	전기실	284.0483 m ²	297.0477 m ²	12.9994 증	
	기계실	466.7626 m ²	462.1980 m ²	4.5646 감	
	지하주차장	66,288.8312 m ²	66,340.3857 m ²	51.5545 증	
사업개요	근린생활시설-1	전용면적: 395.2669 m ² 공용면적: 34.0740 m ²	전용면적: 411.1709 m ² 공용면적: 18.1700 m ²		

동별·층별 개요	근린생활시설-2	전용면적: 372.9200 m ² 공용면적: 21.4400 m ²	전용면적: 380.1000 m ² 공용면적: 14.2600 m ²	
	근린생활시설-3	전용면적: 386.9200 m ² 공용면적: 21.4400 m ²	전용면적: 394.1000 m ² 공용면적: 14.2600 m ²	
건물 배치도	1층 배치도 수정	주차장廻룸 D/A	주차장廻룸 D/A 위치조정	
		제연廻룸 D/A	제연廻룸 D/A 위치 조정	
		선큰라인	주차장 평면도에 맞춰 선큰 라인 수정	
		옹벽 두께	옹벽 두께 수정	
		건축구조물 라인	건축구조물 라인 수정	
		수영장 천창 크기	수영장 천창 크기 오른쪽으로 500mm 늘림	
		수영장 기계실 D/A	수영장기계실 D/A 수정	
		탑라이트	탑라이트 위치 변경	
		쓰레기 보관소	쓰레기보관소 추가(2개소) 및 사이즈변경 (115,116동 사이 1개소, 119동 앞 1개소)	
		지하주차장 연결되는 계단실	지하주차장 연결되는 모든 계단 실에 지붕추가	
		지하 부대복리시설 상부 D/A	지하 부대복리시설 상부 D/A 표시수정	
		실외기 위치	실외기 위치 표시 수정	
		廻룸#17 D/A	廻룸#17 D/A 사이즈 축소	
		자연석 쌓기 없음	자연석 쌓기추가 (106,107,116 동 배면, 114,115동 정면)	
		지하주차장 탑라이트	지하주차장 지붕구조평면도에 맞춰 탑라이트 위치 수정	
		지하주차장 외벽라인	지하주차장 외벽라인 수정	
		건축 옹벽 두께 300mm	외부계단 수정 및 옹벽두께 700mm으로 변경, 높이1M화단 면적축소	
건물 배치도	1층 배치도 수정	근생, 지하 연결 외부계단	근생, 지하 연결 외부계단 상세 도에 맞춰서 수정	
		112동 연도 배관	112동 연도 배관 추가	

		118동 탑라이트	118동 탑라이트 1개소 삭제	
		부출입구 출차 완화차로	부출입구 출차 완화차로 길이 축소	
		지하주차장 입구 연석	연석삭제(길이조절)	
		컨트리매너블럭	컨트리매너블럭 설치 (112동, 119동, 부출입구)	
		교차로	고원식 교차로 설치	
		단지내 도로 선형 곡선형태	직선으로 형태변경 (121, 122동 배면 도로)	
		장애인 주차	지상 장애인 주차 1대 추가 (118동 앞)	
대지 형·종 단면도	대지 도 수정	단지 보강토옹벽	인접대지 고등학교 부지 보강토 옹벽 추가	
		지하주차장 외벽 벽체 배근	지하주차장 외벽을 건축옹벽 으로 계획하여 벽체 배근 수정	
		수영장 하부	수영장 하부 기계실 및 PIT 추가	
		117동 PIT 레벨	117동 PIT 레벨 수정	
		112, 119동 PIT 레벨	112, 119동 PIT 레벨 수정	
쓰레기	평면도	음식물 쓰레기 용기 7개	음식물쓰레기용기 기기당 3개, 바닥트렌치 및 수전 추가	
분리수거 시설	재활용 용기 기 준 및 현황	쓰레기분리수거시설	쓰레기분리수거시설의 증가 (2개소 추가)에 따른 수량변경	
		도면 없음	쓰레기분리수거시설상세도-2 (캐노피 평면도 및 입면도)	
단열성능	외벽(외기 직접)	W3, W4	항목 삭제	
	최하층 바닥 기준층 바닥	THK30 압출법1호	THK30 층간완충재(소음저감재)	
실내외 재료 마감표-1	단위세대-현관	걸레받이바탕: 콘크리트면처리 걸레받이마감: PVC걸레받이	걸레받이바탕: 콘크리트 걸레받이마감: 지정화강석	
	단위세대-욕실	바닥바탕: 액체방수/ 시멘트몰탈	바닥바탕: 액체방수/판넬히팅/ 시멘트몰탈	
실내외 재료 마감표-1	단위세대-펜트리	바닥바탕: 액체방수/ 시멘트몰탈 벽체바탕: 액체방수/ 시멘트몰탈	바닥바탕: 판넬히팅/시멘트몰탈 벽체바탕: 시멘트몰탈	
	단위세대-대피 공간	걸레받이마감: PVC 걸레받이	걸레받이마감: 걸레받이용 페인트	

	지하층-계단실	바닥바탕: 액체방수/ 보호몰탈/THK100 무근CON'C 바닥마감: 지정타일	바닥바탕: 시멘트몰-THK45 배수판/THK155무근CON'C 바닥마감: 지정화강석	
	지하층-ELEV.홀	벽체바탕: 콘크리트면처리 벽체마감: 무늬코트	벽체바탕: 콘크리트 벽체마감: 지정타일	
		천장마감: 수성페인트	천장마감: 지정천장재	
	지하1~2층 PIT	-	아파트 PIT 부분 추가	
	지하층-최하층 PIT	-	아파트 PIT 부분 추가	
	1층-ELEV.홀	걸레받이바탕: 콘크리트면처리 걸레받이마감: 걸레받이용페인트 벽체마감: 무늬코트 천정마감: 수성페인트	걸레받이바탕: 콘크리트 걸레받이마감: 지정타일 벽체마감: 지정타일 천정마감: 지정천정재	
	1층-필로티	벽체마감: 수성페인트	벽체마감: 지정도장	
	동현관 내부	벽체마감: 무늬코트	벽체마감: 지정타일	
	동현관 외부	벽체바탕: 콘크리트면처리 벽체마감: 화강석	벽체바탕: 콘크리트 벽체마감: 지정화강석	
	1층-외부램프	바닥마감: 지정타일 벽체마감: 수성페인트	바닥마감: 지정석재 벽체마감: 석재뿔칠	
	기준층-ELEV.홀	천장마감: 수성페인트	천장마감: 무늬코트	
	옥탑-ELEV.기계실	벽체바탕, 천장바탕: 콘크리트면처리 벽체마감, 천장마감: 지정페인트	벽체바탕, 천장바탕: 콘크리트 벽체마감, 천장마감: 흡음재THK50	
	주동 외부재료-외벽	하부층: 지정석재뿔칠	하부층: 지정석재 하부후면: 지정석재뿔칠	
	주동 외부재료-측벽	하부층: 지정석재뿔칠	하부층: 지정석재	
	주동 외부재료-지붕	경사지붕: 도막방수/ 금속기와	경사지붕: 액체방수/보호몰탈/ 금속기와	
		-	에폭시코팅: 2회 벽타일: 시멘트몰탈은 떠붙임	
실내외 재료 마감표-2	지하1층-주차장 (흙에접하지않는 부위)	바닥바탕: THK100무근Con'c 벽체마감: 외벽-액체방수/ PVC벽체배수판, 내벽-콘크리트면처리/ 수성페인트 천정마감: 수성페인트	바닥바탕: THK100무근Con'c 벽체: 콘크리트면처리/수성 페인트 천장: 콘크리트/흡음뿔칠	
	지하1층-주차장 (흙에접하는부위)		바닥바탕: THK45배수판/THK155 무근CON'C 벽체: 외벽-조인트도막방수 /PVC벽체배수판 내벽-콘크리트면처리/수성페인트	

			천장: 콘크리트/흡음뽀뽀	
	지하1층-헬룸	바닥바탕: 액체방수/THK100무근콘크리트 벽체바탕: 외벽-액체방수, 내벽-콘크리트면처리 천장: 콘크리트면처리/ 수성페인트	바닥바탕: THK100무근콘크리트 벽체바탕: 콘크리트면처리 천장: 콘크리트/흡음뽀뽀	
	지하1층-램프	바탕: 액체방수/THK100무근CON'C 천장: 콘크리트면처리/ 수성페인트	바탕: THK100무근CON'C 천장: 콘크리트/흡음뽀뽀	
	지하2층-계단실	-	미표기마감 추가 기입	
	지하3층-지하 저수조	바닥바탕: THK45배수판 /THK100무근CON'C 벽체마감:- 천장마감:-	바닥바탕: THK45배수판 /THK155무근CON'C 벽체마감: 수성페인트 천장마감: 콘크리트/수성페인트	
	지하3층 - 기계실	바닥바탕: THK45배수판 /THK100무근CON'C 천장바탕: 콘크리트면처리	바닥바탕: THK45배수판/THK155 무근CON'C 천장바탕: 콘크리트	
	지하3층 - 전기실	바닥바탕: THK45배수판 /THK100무근CON'C 천장바탕: 콘크리트면처리	바닥바탕: THK45배수판/THK155 무근CON'C 천장바탕: 콘크리트	
	지하3층 - 발전기실	바닥바탕: THK45배수판 /THK100무근CON'C 천장바탕: 콘크리트면처리	바닥바탕: THK45배수판 /THK155무근CON'C 천장바탕: 콘크리트	
	주기	-	에폭시코팅: 2회 벽타일: 시멘트몰탈은 떠붙임	
실내외 재료 마감표-3	보육시설 - 다용도실	걸레받이: 일부-콘크리트면 처리, 석고보드/지정걸레받이 벽체: 일부-콘크리트면처리, 석고보드/수성페인트 천장: 콘크리트면처리/수성 페인트	걸레받이: 일부-콘크리트, 석고 보드/지정타일 벽체: 일부-콘크리트, 석고보드/ 지정타일 천장: 지정천장틀/PVC천장재	
	보육시설-목욕실 유아화장실, 교사화장실	벽체바탕: 액체방수 (H=1,200)/시멘트몰탈	벽체바탕: 액체방수(H=1,200) /시멘트몰탈 위	
	경로당 - 다용도 실	천장: 콘크리트면처리/ 수성페인트	천장: 지정천장틀/PVC천장재	
	경로당 - 화장실	벽체바탕: 액체방수 (H=1,200)/시멘트몰탈	벽체바탕: 액체방수 (H=1,200)/시멘트몰탈 위	
실내외 재료 마감표-3	MDF실	천장마감: 수성페인트	천장마감: 지정텍스	
	공통 - 화장실	벽체바탕: 액체방수 (H=1,200)/시멘트몰탈	벽체바탕: 액체방수 (H=1,200)/시멘트몰탈 위	
	주기	-	에폭시코팅: 2회 벽타일: 시멘트몰탈은 떠붙임	
실내외 재료	휘트니스실	바닥마감: 비닐계타일	바닥마감: 강마루	
	GX룸	바닥마감: 비닐계타일	바닥마감: 강마루	

마감표-4	수영장, 탈의실	천장마감: 지정천장재	천장마감: SMC천장재	
	샤워실	벽체바탕: 액체방수(H=1,800)/시멘트몰탈 천장마감: 지정천장재	벽체바탕: 액체방수(H=1,800)/ 시멘트몰탈 위 천장마감: SMC천장재	
	창고	천장마감: 콘크리트면처리 /수성페인트	천장마감: 지정천장틀 /지정천장재	
	주민운동시설 - 파우더룸	-	미표기마감 추가 기입	
	주민운동시설 - 계단실	-	미표기마감 추가 기입	
	주민운동시설- 수영장하부 기계실	-	미표기마감 추가 기입	
	주민운동시설 - 선큰	-	미표기마감 추가 기입	
	공통 - 화장실	벽체바탕: 액체방수 (H=1,200)/시멘트몰탈	벽체바탕: 액체방수 (H=1,200)/시멘트몰탈 위	
	키즈랜드	-	미표기마감 추가 기입	
	근린생활시설	바닥마감: 지정타일	바닥마감: 비닐계타일	
	근린생활시설 - 복도	바닥마감: 지정타일	바닥마감: 지정석재	
	근린생활시설 - 계단실	바닥마감: 지정타일	바닥마감: 지정석재	
	근린생활시설 - 화장실	벽체바탕: 액체방수 (H=1,200)/시멘트몰탈	벽체바탕: 액체방수 (H=1,200)/시멘트몰탈 위	
	주기	-	에폭시코팅: 2회 벽타일 : 시멘트몰탈은 떠붙임	
실내재료	마감	조적하부 방수턱 표기	조적하부 방수턱 삭제	
상세도	바닥, 걸레받이	욕실바닥마감: 액체방수/ 보호몰탈, THK50경량기포 콘크리트, 시멘트몰탈, 지정 타일	욕실바닥마감: 액체방수 시멘트몰탈, 지정타일	
실내재료	마감 상세도	현관 마감: PVC 걸레받이	현관 마감: 석재 걸레받이	
		발코니 바닥마감: 액체방수/ 보호몰탈	발코니 바닥마감: 액체방수	
		THK100 단열재	THK65 단열재	
		욕실바닥마감: 액체방수/ 보호몰탈, THK85경량기포 콘크리트, 시멘트몰탈, 지정 타일	욕실 바닥마감: 액체방수 시멘트몰탈, 지정타일	
		-	현관 바닥마감: THK85 경량기포 콘크리트 삭제	
		발코니 바닥마감: 액체방수/	발코니 바닥마감: 액체방수	

		보호몰탈	THK35 경량기포콘크리트 삭제	
		위치: ELEV.홀, 계단실 (1~3층), 주출입구	위치: 계단실(지하층~1층) 주출입구	
		위치: ELEV. 홀, 계단실 (지하층, 기준층, 옥탑층)	위치: ELEV.홀 (지하층, 기준층, 옥탑층)	
		평지붕옥상: 액체방수/THK100무근Con'c (#8와이어메쉬)/쇠흙손마감	평지붕옥상: 비노출우레탄방수/THK100무근 콘크리트(섬유보강재)/쇠흙손마감	
	기준층 및 최상층 욕실 천정	천장마감: 지정천장틀/지정천장재	천장마감: 지정천장재	
	전층 ELEV홀 천정	천장마감: THK9.5석고보드 1겹/수성페인트	천장마감: THK9.5석고보드1겹/무늬코트	
단위세대 평면도	공통사항	커텐박스 폭(W): 150mm	커텐박스 폭(W): 160mm	
		안방 화장대 경량벽체	안방 화장대 가구 일체식 벽체로 대체	
		드레스룸 문: WD3	드레스룸 문 수정	
		단열재 T60	단열재 T70	
	84형 단위세대 평면도(확장형)	단열재 창틀	단열재 창틀 끝까지 연장	
		펜트리장 외부 결로방지 단열재 20mm	펜트리장 내부 단열몰탈	
		외부 계단실 EPS, TPS 점검구문 없음	외부 계단실 EPS, TPS 점검구문 추가	
	77형 단위세대 평면도(확장형)	단열재 창틀	단열재 창틀 끝까지 연장	
		드레스룸 조적벽체 내부 결로방지 단열재20mm	드레스룸 조적벽체 외부 단열몰탈바름	
동평면도	지하층 평면도	-	EV내 집수정표기, PIT OPEN 트렌치표기 EPS, TPS 점검구문 표기 집수정 위치변경	
	1층, 기준층 평면도	-	출입구 측면 D/A 표기, EPS, TPS 점검구문 표기	
	옥상 평면도	옥탑 계단실 문	옥탑 사다리 표기 및 계단실 문방향 변경	
	119동	-	109동 지하 PIT 평면도 도면 추가	
	112동	-	112동 지하 PIT 평면도 도면 추가	
		-	주민운동시설기계실과 연결되는 보일러연도배관을 112동 계단실에 인접하여 설치	
		-	코어#2부분 옥탑 평면도 및	

			지붕평면도에 연도 배관 추가	
입면도	단지 외벽마감	1~3층 석재뿔칠	1~2층 정면, 측면 지정석재 (116~123동 제외) 1~3층 정면, 측면 지정석재 (116~123동)	
	단지 외벽 갤러리창	발코니 갤러리창	발코니 갤러리창 연도 타공	
	112동	-	주민운동시설기계실과 연결되는 보일러연도배관을 112동 계단실에 인접하여 설치	
	단지전체 입면도	-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D/A그릴창추가, 장비반입구추가, 근린생활시설-1상부에 주차장 웬룸#6D/A 그릴창추가	
단위세대 주단면	84형 단위세대	평지붕-액체방수/THK100 무근CON'C 지붕트러스-바탕각재, 기와받침	평지붕-도막방수/THK100무근 CON'C 지붕트러스-기와결이각형강관	
동단면도	109,112동	PIT SL: +101.55	PIT SL: +101.50	
	115동	PIT SL: +92.55	PIT SL: +92.50	
	116,117동	PIT SL: +90.85	PIT SL: +90.80	
	103~108, 113, 114, 115, 116, 117, 118동	B2F SL: +97.95	B2F SL: +97.90	
	121,122,123동	B2F SL: +102.35	B2F SL: +102.30	
	101, 102, 109~112, 119, 120동	B1F SL: +103.75	B1F SL: +103.70	
	105, 108, 114, 118, 120, 122, 123동	-	일부구간의단열적용, 외부단열재 위 방수턱적용, 보수위결로방지 단열재THK10적용	
코아 평면도	지하층~1층 평면도	지하층계단실바닥마감: 지정타일 1층 주동현관, 계단실, EV 홀 바닥마감: 지정타일	지하층계단실바닥마감: 지정석재 주출입로1층주동현관, 계단실, EV홀바닥마감: 지정석재	
	옥상 평면도	옥상 계단실 문 방향: 계단 실 안쪽 열림	옥상 계단실 문 방향: 계단실 바깥쪽 열림	
	옥상, 옥탑, 옥 탑지붕 평면도	옥상 외부 사다리 표기 없음	옥상 외부 사다리 표기	
	101,106,107, 109,110,111, 113,115,116, 119,120,121, 122,123동	-	EV HALL 조적추가, PIT 점검구 문 표기	
코아 단면도	113동	-	지상 D.A 추가	
부분단면 상세도	옥상바닥	옥상외부평바닥: 액체방수위 THK100무근콘크리트	옥상외부평바닥: 도막방수위 THK100무근콘크리트	

주출입구 상세도	주출입구	지정석재뽐칠	지정석재	
		주출입구 인방 H=500	주출입구 인방 H=900	
		백업 천정틀	백업 천정틀 삭제	
	주출입구 지붕마감	도막방수+보호물탈	도막방수+무근CON'C으로 변경,	
	주출입구	-	골조라인 100mm 이동	
필로티 상세도	각동 필로티 마감	각동 필로티 바닥마감: 지정타일	각동 필로티 바닥마감: 인조 화강석 블럭	
		각동 출입구 바닥마감: 지정타일	각동 출입구 바닥마감: 지정석재	
		각동 정면도 입면 마감: 지정석재뽐칠	각동 정면도 입면 마감: 지정석재	
AD,PD 상세도	옥상 흡출기	-	AD 흡출기 골조벽 높이 변경	
지붕 상세도	지붕 평면도	옥상 계단실 문 방향: 계단실 안쪽 열림	옥상 계단실 문 방향: 계단실 바깥쪽 열림	
	지붕 평면도	옥상 외부 사다리 표기 없음	옥상 외부 사다리 표기	
	지붕 단면도	지붕트러스-바탕각재, 기와받침	지붕트러스-기와걸이 각형강관	
단위세대 창호도	대피실	대피창호 마감: PVC 비닐래핑(내측)	대피창호 마감: PVC 백색	
공용 창호도	아파트 공용 창호 변경	AW/3: 900X1100	AW/3: 900X2400	
		AG1: 1200X1000	AG/1: 1200X1400	
지하 주차장 평면도	헬룸 전체 출입문	-	헬룸 전체 출입문 창호도에 맞춰 수정함.	
	지하주차장	카 스토퍼 1개	카 스토퍼 2개	
	전기실	-	좌측 조적벽 삭제 및 하부 일부 조적벽 추가	
	헬룸#5	-	우측 조적벽체 100mm이동	
	외부계단	-	좌측 벽체 삭제	
	PIT	-	창호 추가	
	헬룸#6, #3	-	DA 위치 상세도와 맞춤	

	수영장 기계실 DA	-	DA 위치 및 면적 변경	
	수영장 기계실	-	출입문 삭제	
	헬룸#13	-	출입문 위치 및 벽체 변경	
	헬룸#14	-	조적벽체 삭제	
	주차램프	-	PIT 조적벽체 변경	
	헬룸#7, #13	-	조적벽체 위치 변경 및 면적 변경	
	계단실	-	지하2층으로 가는 계단 추가	
	PIT	-	조적벽체 위치 변경	
	106동,107동 배면벽체개구부	골조벽	조적벽으로 변경	
	외부계단	-	좌측 벽체 삭제	
	주차램프	골조벽	조적벽으로 변경	
	헬룸#17	PIT	좌측 PIT 삭제함	
커뮤니티 시설	화장실(작은도서관)	-	여자 화장실 위치 반전시킴	
	수영장 샤워실	-	내부 변경 및 창호 추가	
	골프연습장	-	PIT 출입문 삭제	
주차장 형·종 단면도	지하주차장 레벨	B1F SL (+101.55), B2F SL (+97.95)	B1F SL (+101.60), B2F SL (+97.90) 등	
		램프 헤드룸: 3,116	램프 헤드룸: 2,986	
	발전기실	-	상부 DA 추가 및 지하1, 2층 외벽 OPEN	
	주차램프	골조벽	조적벽으로 변경	
	지하주차장 외부 계단	115동~116동 사이 외부계단	지하2층 1SPAN줄임	
			PIT 우측으로 늘림	
		116동 우측 외부계단	지하2층 주차장 일부 삭제	
			지하2층 주차장 추가, 주차램프	

			레벨 내림	
			지하2층 주차장 일부 삭제	
	지하2층 램프#2 확대평면도	-	문 추가	
주차장 창호도	지하3층	-	AG/1(2EA), AG/5C(2EA), SD/1(2EA) 추가	
	지하2층	-	AG/2C(1EA), AG/3C(1EA), AG/4C(2EA), AG/9A(1EA), FSD/4(4EA) 추가	
	지하1층	-	AG/7A(1EA), AG/10A(2EA), FSD/4(1EA) 추가	
	전기실 발전기실	SD/1 미표기	SD/1 추가	
	헬룸#6	AG/10A: 6000X2000	AG/10A: 6000X1000	
	외부계단	105동~106동 사이 외부 계단	계단 단수 추가	
지하주차장 계단상세도	외부계단 지붕	지붕마감: THK3폴리카보네이트, 기둥Φ100mm스텐레스	지붕마감 THK10폴리카보네이트, D.A위치변경으로인한 단면수정 기둥: 100*100mm스틸파이프	
제연헬룸 상세도	제연헬룸 천정	D.A 상부마감: 지정수성 페인트2회	D.A 상부마감: 지정석재마감	
헬룸 상세도	헬룸 마감	D.A 상부마감: 지정수성 페인트2회	D.A 상부마감: 지정석재마감	
		최하층 바닥마감: THK100 무근 CON'C	최하층 바닥마감: THK155 무근 CON'C	
헬룸 상세도	헬룸#2	집수정	집수정 위치 변경	
	헬룸#8	지상 D.A 폭: 1,800mm	지상 D.A 폭: 2,500mm (700mm 증가)	
	헬룸#12	주차장 헬룸 D/A	주차장 헬룸 D/A 사이즈 변경 및 위치조정	
	헬룸#17	주차장 헬룸 출입문	주차장 헬룸 출입문 위치 변경	
	헬룸#18	헬룸 폭: 2,000mm	헬룸 폭: 2,500mm	
주민운동 시설 및 작은 도서관	수영장	수영장 레인: 2	수영장 2레인에서 3레인으로 1레인 증가	
	스크린 골프 연습장	-	WD/2 추가	
		헬룸 D.A	헬룸 D.A 위치 변경	
		골프연습장	락카룸, 스크린 연습장 추가	

		썸큰	썸큰E/V뒤 주차장 및 집수정 조적 구획화	
	선큰	레벨: 101.60	레벨: 101.65 으로 조정	
	수영장	PIT 없음	수영장 하부PIT 형성	
		-	단열재 두께 변경, PE필름 추가	
	스크린골프 연습장 창호	-	WD/2	
키즈랜드	키즈랜드 창호	사무실 창호 미표기	사무실 창호: AW/8, AW/7 표 기	
		유아도서관, 열람실 창호	일부 창호 변경(AW/3, AW/4)	
	출입구	캐노피 없음	상부 캐노피 설치	
	화장실	화장실 문: WD/1	화장실 문: SD/1 변경	
	열람실	-	열람실 폭 200mm 증가	
	단면도	옥상마감 미표기	옥상마감 표기	
		바닥마감 미표기	바닥마감: 단열재 두께 변경 및 PE필름 추가	
	창호도	AW/2, AW/1	AW/2: 창호사이즈변경, AW/1: 문 위치 이동	
키즈랜드	창호도	AW/3, AW/4	창호 위치 변경에 따른 창호 사이즈 수정	
		-	AW/7, AW/8, SD/1 창호 추가	
경로당 및 관리 사무소	관리사무소	PW/3 창호	창문설치 높이 변경으로 인한 창 부호 변경: PW/3a, PW/3b	
	경로당	경로당 방풍실 창호 미표기	방풍실 SSD/5 창호 표기	
	경로당	SD/3	SD/1으로 변경 (경로당 주방, 감시제어반실)	
	관리사무소	감시제어반실 문: 철재 양여닫이문	감시제어반실 문: 철재 여닫이 문으로 변경 (SD/1)	
	관리사무소	MDF실 문: 목재 여닫이문	MDF실 문: 철재 여닫이문으로 변경 (SD/1)	
	경로당	건강관리실,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WD/1	건강관리실, 할아버지방, 할머니방: WD/3 (치수변경)	
	경로당	WD/2 장애인화장실: 목재 미서기 문	WD/2 장애인화장실: 목재 여닫이문	

	경로당, 관리사무소	-	마감: 단열재 두께 변경 및 PE필름 추가	
보육실	목욕실	목욕실 평면	목욕실 평면 변경	
	다용도실	-	다용도실 PW/3 표기누락	
	현관	현관문	현관문: PW6 표기누락	
	외부 데크	데크 문	데크 문 위치 변경 및 폭 수정	
	외부 데크	-	지정목재 마감 추가	
	보육실 마감	-	마감: 단열재 두께 변경 및 PE필름 추가	
	보육실 창호	PW/3 폭: 1,200mm	PW/3 폭: 900mm	
		PW/1, PW/2, AW/1 창호	PW/1, PW/2, AW/1 창호 수정	
		-	WW/1 추가	
경비실	외벽 마감	-	AL시트판넬 추가	
		화강석 버너구이	화강석 물갈기로 변경, AL시트판넬 표기	
	경비실 단면도	경비실 단면도	경비실 단면도 701,702동 구분	
경비실	경비실 단면도	반자 높이: 2,365mm	반자 높이: 2,300mm	
	경비실 창호	-	화장실 창문 삭제	
		-	로이 소프트코팅 주기 추가함	
근린생활 시설 (801)	창호	SD/1 창호, WD/1창호	SD/1 창호 표기 추가, WD/1창호 삭제	
	PIT 단면도	-	화장실 PIT 조적 두께변경 및 삭제	
	입면도	-	갤러리창 추가	
	횡단면도	-	PIT 추가	
	옥상	옥상바닥 마감 미표기	옥상바닥 방수 마감표기	
	창호	AW 창 마감: THK22 로이복층 아르곤	AW 창 마감: THK24 로이복층 아르곤	
		화장실 문: WD/1	SD/1 창호 변경	
		-	로이 소프트코팅 주기 추가함	

근린생활 시설 (802)	창호	AW 창호	AW 문 방향 변경	
	창호	화장실 문: WD/1	SD/1 창호 변경	
		-	근린생활시설 문 방향 변경	
	옥상	옥상바닥 마감 미표기	옥상바닥 방수 마감표기	
	창호	AW 창 마감: THK22 로이복층 아르곤	AW 창 마감: THK24 로이복층 아르곤	
		AW 창호	AW 문 방향 변경	
		화장실 문: WD/1	화장실 문: SD/1 (변경)	
		-	로이 소프트코팅 주기 추가함	
근린생활 시설 (803)	창호	AW/3 창호 표기 없음	AW/3 창호 표기 추가	
		AW 창호	AW 문 방향 변경	
		화장실 문: WD/1	화장실 문: SD/1 (변경)	
근린생활 시설 (803)	창호	-	근린생활시설 문 방향 변경	
	옥상	옥상바닥 마감 미표기	옥상바닥 방수 마감표기	
	창호	AW 창 마감: THK22 로이복층 아르곤	AW 창 마감: THK24 로이복층 아르곤	
		AW 창호	AW 문 방향 변경	
		AW/3 창호 누락	AW/3 창호 추가	
		화장실 문: WD/1	화장실 문: SD/1 (변경)	
		-	로이 소프트코팅 주기 추가함	
토목	역L형 옹벽	H=1.0~3.0m, L=93m	삭제	
	101동 전면 자연석쌓기	H=0.5~4.2m, L=114.5m	H=0.5~4.2m, L=192.3m	
	U형 플룸관	설계누락	300mm, L=210m	
	우수관 (PVC파이프)	설계누락	D200, L=2,123m	
	빗물받이	410*510 64개소	410*510 73개소	

	오수관 (PE이중벽관)	D200mm, L=1,884m	D200mm, L=2,331m	
조경	식재계획	교목3,353주, 관목69,890주	교목3,929주, 관목83,950주	
	시설물계획	사각파고라 5개소	사각파고라 3개소, 티하우스 2개소, 로툰다 키즈스테이션, 자동차파고라	
	어린이놀이터	보육시설 앞 놀이터	물놀이 시설로 변경	
	야외 주민운동시설	인조잔디	천연잔디	
	수공간 상세도	바닥분수	석가산+연못	
	야외 운동기구	기존 계획	운동기구 성능 향상	
	어귀마당	석등 8개소	석등 6개소, 열주 6개소 추가	
기계설비	위생 배관	아파트 펌프실 펌프 미표기	아파트 펌프실 존 위치변경	
	단위세대 난방	화장실 난방코일 설치 미표기 (77,84형)	화장실 난방코일 설치 표기 (77, 84형)	
		화장실, 침실1 불박이장 하부 난방코일 미표기(84형)	화장실, 침실1 불박이장 하부 난방코일 표기(84형)	
	주방 배기	주방배기 직방배기	주방배기 통합배기	
	급수·급탕	동 지하 급수배관 구역 1개 소 인입	동 지하 급수배관 구역 2개소 인입	
	우수 배관	우수입상 미표기	우수입상 표기	
	옥외 도시가스 배관	가스인입구역 (1개소)	가스인입구역 (2개소)	

7. 변경승인일 : 2019. 2. 7.

8. 다른 법률의 의제사항 :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9. 관계도서는 예천군청 건축과(☎054-650-6947)에 비치하였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예천군 공고 제 2019 - 204 호

공인 폐기 및 신조(등록) 공고

예천군 공인조례 제10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폐기 및 신조(등록) 공인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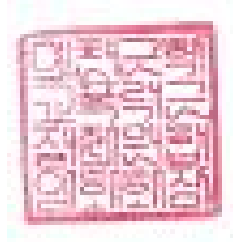
1. 폐기 사유 : 공인 미사용
2. 폐기 개시일 : 2019년 2월 11일
3. 폐기 공인내역 : 붙임과 같음

2019년 2월 11일

예 천 군



폐기 공인 내역

구 분	공 인 명	서체 및 규격	인 영	비 고
폐기	예천군학교폭력 근절지원협의회장	전서체 2.0cm×2.0cm		

예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들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 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2월 11일

예 천 군 수

1. 제정이유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예천군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재산 관리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23조)

- 주민협의체(안 제5조~제6조)
- 도시재생위원회(안 제7조)
- 전담조직(안 제8조)
- 도시재생지원센터(안 제9조~제10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5조~제23조)

3. 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도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처 의견 제출방법 : 서면, 팩스, 직접방문 등
 - 주 소 :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도시과(4층)
 - 전 화 : 054-650-6243
 - 팩 스 : 054-650-6349
- 자세한 내용은 예천군청 홈페이지(<http://www.yecheon.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예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예천군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이란 예천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군 내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주민협의체”란 도시재생사업의 추진과 관련된 공동체, 주거환경, 문화 및 지역경제 등의 다양한 의견을 조정·소통하는 자발적인 주민 협력조직을 말한다.
3. “사업추진협의회”란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계획 목표 설정, 추진 전략, 단위사업의 내용 등 중요 의사결정을 위하여 구성된 협의기구를 말한다.

제3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조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보안·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차장, 공중화장실, 주민운동시설, 독서실·문고, 영유아 보육시설, 수유실, 자전거보관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
3. 쓰레기수거·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

제4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의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전부 또는 일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할 수 있다.

제5조(주민의 참여)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의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다.

제6조(주민협의체의 설립) ① 도시재생사업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주민협의체는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공감대와 참여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수행한다.

③ 주민협의체의 대표는 주민협의체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④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협의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은 주민협의체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 관련 사업비 집행내역과 다음 해의 사업계획을 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도시재생위원회) 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예천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도시재생 관련 주요시책

2.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3.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제출한 제안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예천군 군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에 따른다.

제8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전담조직은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12조 각 호 사항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전담조직의 구성과 사무분장에 대한 사항은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예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제9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지원센터는 주민과 행정기관 간의 소통, 주민 등의 재생관련 계획 수립 지원 및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기술적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⑥ 군수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업무는 다

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 제안의 사전검토
2. 주민협의체 및 사업추진협의회에 대한 업무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
3.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 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4.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5. 제4호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구의 설립 지원
6. 도시재생 관련 홍보
7. 주민교육 및 활동가 양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정하는 업무

제11조(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평가) 군수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 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도시재생사업의 시행 및 관리) ① 군수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사업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전체 사업추진 일정을 관리하고, 예산지원의 시기·방식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이 부진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사업의 효과를 지속시키고 주민들이 자생적인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주민의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의 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사업시행자, 사업총괄코디네이터, 지원센터, 주민협의체 대표, 시민단체,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이

하 “사업추진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
2.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방안 마련
3.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이견과 갈등 조정

③ 사업추진협의회 의장은 군수가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업추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14조(도시재생협정)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대한 주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협의체 등과 도시재생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제15조(도시재생사업 지원) ①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 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지원금액의 환수)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 및 「예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7조(융자의 조건) ①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

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군수와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18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운영) ①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9조(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20조(특별회계의 운영·관리) 특별회계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21조(국유재산·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① 군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의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이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포함된 경우로서 도시재생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법 제30조 및 영 제37조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처분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에 활용도가 낮고 저평가된 국·공유재산에 대해 공공기관(LH, 자산관리공사 등)에 위탁개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종전부동산 등 행정목적이 종료된 부지 및 행정목적에 활용이 곤란한 소규모 공유지 등을 도시재생사업에 활용하고 비어있는 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순환형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22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내 제2조에 따른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경할 수 있다.

제23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times$ (1+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div$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한 범위 이내

②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예천군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재정수반요인

- 가. 내용 :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도시재생지원센터, 주민협의체, 사업추진협의회 설치·운영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에 따른 경비
- 나. 관련조문 : 예천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 제9조, 제13조, 제15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수립 및 집행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인건비 및 운영비 등	201,281	221,409	243,549	267,903	294,693	1,228,835
	소계(b)	201,281	221,409	243,549	267,903	294,693	1,228,835
□ 총 비용(a-b)		△201,281	△221,409	△243,549	△267,903	△294,693	△1,228,835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국비							
도비							
군비	일반회계	201,281	221,409	243,549	267,903	294,693	1,228,835
	특별회계						
	기금						
민간							
기타							
합계		201,281	221,409	243,549	267,903	294,693	1,228,835

5. 부대의견 : 해당없음

6. 작성자 : 도시과 지방시설사무관 강 성 철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항목		예산액(원)	산출내역(원)
계		201,281,000	
도시 재생 지원 센터	센터장 및 자문수당	34,876,000	- 363,290원 × 8회 × 12월 = 34,876,000원
	운영 사무원 인부임	21,648,000	- 21,648,000원 × 1명 = 21,648,000원
	회의 및 자문수당	64,602,000	- 1,794,480원 × 3명 × 12월 = 64,602,000원
협의회 및 위원회	운영수당	24,000,000	- 100,000원 × 10명 × 24회 = 24,000,000원
	유인물 인쇄	4,500,000	- 15,000원 × 25부 × 12월 = 4,500,000원
도시재생 활동가 활동 수당		39,875,000	- 830,730원 × 4명 × 12월 = 39,875,000원
도시재생 민관협의회 운영		2,000,000	- 2,000,000원 × 1식 = 2,000,000원
사무용품 및 사무기기 유지관리		5,400,000	- 450,000원 × 12월 = 5,400,000원
주민대표단 등의 선진지 견학 등		1,500,000	- 100,000원 × 15명 × 1회 = 1,500,000원
주민대표단 등의 급식비		2,880,000	- 8,000원 × 15명 × 24회 = 2,880,000원

<참고자료>

관 계 법 령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공동이용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에서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 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놀이터, 마을회관, 마을 도서관 등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2. 공동으로 사용하는 구판장·세탁장 등 공동작업장, 화장실 및 수도
3. 어린이집·경로당 등 아이돌봄서비스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4. 마을방송국·마을신문사 등 지역주민 간 정보교류 및 의사소통을 위한 시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제11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 등) ① 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시·군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수립 지원 및 승인, 시·군간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연계·조정 등 업무와 관련된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자치구의 구청장 및 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이하 "구청장등"이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은 전담조직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임기제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담조직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4조(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의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시·군의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및 승인, 시·군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연계·조정 등 업무와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구청장등은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전략계획수립권자, 도지사 또는 구청장등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구성한다.

1.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밝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방식, 인적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
2.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

제39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의 적용범위) ①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폐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②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완화할 수 있다.

